

호주제 폐지와
21세기의 가족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호주제 폐지와
21세기의 가족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운동 차원에서 수십여년 간 지속해온 민법개정운동의 큰 방향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진일보시킬 것으로 본다.

1957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진행되어 온 가족법 개정운동은 크게 3회에 걸쳐 가족법 개정의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호주제의 존폐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 가운데 친족·상속편(이하 가족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 내용이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따라서 가족법의 역사는 곧 개정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호주제 부분은 몇 번의 개정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축소되었지만, '호주'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호주제가 여전히 법적으로 존재하면서 가정의 민주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개정운동을 주요 목표로 활동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호주제 폐지를 목표로 2000년 9월 발족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국회 청원서 제출, 토론회, 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 위헌소송 등 다양한 방식의 폐지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1년 4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호주제 관련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결과를 얻어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의 위헌성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상담소를 포함한 '시민연대'는 지난 16대 국회에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접수시켰으나 아쉽게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이제 17대 국회에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2건이 제출되어 호주제 폐지의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법 앞의 양성평등, 혼인생활에 있어서 부부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또한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시대에 걸맞는 가족규범과 윤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호주제 폐지는 중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 호주제의 문제 - 폐지의 당위성

호주제는 거대한 허구이다. 현실의 가족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문제는 그간의 민법개정운동을 통해 호주의 권리·의무는 형해화 되었으나 여전히 호주승계순위를 비롯해 호주제 자체가 민법상에 남아 있어 우리 사회에서 보편타당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호주제는 이러한 개인적 부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부부갈등의 근원적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1) 호주제란 무엇인가

민법 제778조는 호주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또한 민법 제984조는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순으로 호주승계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그 가(家)를 대표하며, 이어가는 자이다. 그리하여 호주제의 내용은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되는 추상적인 가(家)제도,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그리고 호주권의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간의 가족법개정운동을 통해 호주의 권리·의무가 거의 삭제되어 권한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호주승계제도와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추상적인 가제도가 여전히 우리 가족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 '가'(家)라는 거대한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호주제

호주제가 기대고 있는 가(家)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집, 가정이나 가족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호주제가 상정하고 있는 관념적 가족단체인 가는 추상적으로 법률상에만 존재하는 관념인 것이다.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함께 생활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가(家)에는 속한다고 되어 있어 문제적 상황을 발생시

킨다. 이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분가호주가 되지 않고 - 임의분가 가능 - 아버지가 사망하면 뒤를 이어 호주가 되는데 이 장남의 호적에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어머니라든가 미혼의 형제·자매가 함께 등재되는 것이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은 혼인하면 부(夫)가에(민법 제826조 제3항), 자녀는 출생하면 부(父)가에 입적하도록(민법 제781조 제1항) 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처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부가(夫家) 혹은 부가(父家)가 존재함으로써 부모가 이혼 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며 '한 집'에서 살아도 어머니와 자녀는 같은 가(家)에 속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

호주제란 바로 현실과 무관한 추상적 가(家)를 지키고 부계·남계 혈통의 가 계승을 위한 것으로 개인의 인권을 희생시키고 부부평등·양성평등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호주제, 다양한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2003년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458쌍이 이혼하였다. 인구 천명당 이혼율을 의미하는 조이혼율을 보면 1993년 1.3건, 2001년 2.8건, 2002년 3.0건, 2003년 3.5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93년)에 비해 2.7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이혼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혼의 증가와 연관된다. 혼인의 형태에 있어 남성과 여성 모두 초혼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남성 재혼 + 여성 초혼의 경우는 1993년 3.4% 수준에서 2003년에는 3.9%로 증가하였고 여성 재혼 + 남성 초혼의 경우는 1993년 3.1%에서 2003년에는 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과 남성 모두 재혼인 경우는 10년 전 1993년의 5.5%에서 2002년 12.6%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혼인 10쌍 가운데 1쌍은 남녀 모두 재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율의 저하, 이혼율의 증가, 재혼가정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신 인구가 늘어나고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호주제를 근간이 되고 있는 현행 우리 가족법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를 담아내지 못하고 이들 가족관계를 모두 비정상적인 것

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4)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봉건관습을 탈피하는 호주제 폐지

호주제는 정치적으로 전제주의를 배경으로 하며, 경제적으로는 농업
을 기반으로 한 토지경제체제 그리고 신분사회의 산물이다. 따라서 민
주주의, 자본주의, 평등사회로 탈바꿈한 21세기는 호주제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한 상태로 이미 그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현
행 호주제를 우리나라에 이식시킨 일본에서는 몇 십년전 이 제도를 폐
지함으로써 과거의 유물로 남아있을 따름이다.

우리 역사에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호적과 호적편성의 규정이 있
었고 특히 조선 초기에 이르러 유교적 종법제가 확립되면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형성되기에 이르나 이를 오늘날의 호주제라고 주장하는 것
은 심각한 역사적 사실관계의 왜곡이다. 대가족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농경사회에서 호주는 노비를 포함한 현실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
로서 부역, 조세 등의 편의를 위해, 현실적 필요에 따라 존재했다. 뿐
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호적을 보면 아버지 사망 후 당연히 아들이 호
주를 승계하는 현재와 달리 부인이 호주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즉 현재의 호주제는 우리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일제 침략 이후 일
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통적 가부장제의 요소가
강화되고 변질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일제는 식민지배의 편의를 위해
내선동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의 가족제도를 천황제의 하부구조
로 편입시키기 위해 그들의 호주제와 가제도를 조선에 이식하였던 것
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가 된 중국은 물론 일본도 패전 이후 가족구성
원 개인의 인격주체가 가에 매몰되고 무시되는 반민주적 제도이며 헌
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나 해방 이후 반세기를 넘
어서는 오늘날까지 우리는 식민지배의 잔재를 민족고유의 전통이라 왜
곡하며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한 근
본적 요인은 일제 식민지배이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우리는
통상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은 물론 아직까지 그 잔재를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심각한 문화지
체를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 그리고 공업화와 도시화 등 근대사회의 기본적 틀은 구현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합리성의 구현이나 개인적인 가치의 존중이라는 면에서 보면 여전히 전근대적·봉건적 요소가 관습적으로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이다.

특히 가정으로 눈을 돌리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가족법은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인 호주제를 대표로 여전히 봉건적이며 가부장적인 논리로 가족관계를 규율하려 함으로써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는 곧 가족법에 남아 있는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전근대적 관습을 탈피하고 내용적으로도 진정한 근대화를 구현하는 역사적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호주제 폐지를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올바른 역사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뜻하는 것이다.

5) 호주제의 위헌성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하였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 1항, 2항)고 하였다. 또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36조 1항)고 하였으며, 아울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제37조 1항)고 하였다.

그러나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를 의미하는 호주가 어떻게 승계되는지를 살펴보자.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여, 남성을 우선순위로 하고 남성이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여성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며, 남성 우월의식을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앞서 언급한 남편의 가, 아버지의 가에 아내와 자녀를 입적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 존재로 규정하여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는 존재 자체가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하여 이를 확대재 생산하고 또한 남성우월의식에 기반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혼인이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호주제는 현대 한국사회의 이혼과 재혼, 비혼모, 미혼모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끌어안지 못하고 이들 구성원들의 삶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3. 시대적 요구이며 당위인 호주제 폐지

오늘 날 우리 사회의 가정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구체적인 현상으로는 혼인율과 출산율의 저하, 이혼율의 급증으로 나타나는 가족해체가 그것이다.

가족은 인류의 보편적 존립형태이며 사회적으로 다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족만이 가지는 본질적이며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혼인이라는 사회적 공시 절차에 의해 부부의 지속적인 결합이 법적·사회적으로 승인되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적(性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녀의 양육을 통한 사회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본질적 기능을 기초로 부부의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정서적 융합 속에서 자녀들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가족은 사회의 일차적 집단이고, 공동사회 집단이며, 성(姓)과 혈연의 공동체·거주의 공동체·가계(家計)의 공동체인 동시에 무엇보다 애정의 결합체·운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 이외의 가족 형태와 성격, 기능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해왔다. 농경사회에서는 그에 적합한 대가족형태가 일반적이었다면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부부 중심의 핵가족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관, 가족 윤리 또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는 내용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 사회의 가정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우리가 형식에 맞는 가치관과 윤리를 갖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배제하려는 시대착오적 흐름과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 호주제는 가족문제의 근원

가족은 혈연공동체인 동시에 애정공동체이다. 과거 가족 노동을 바탕으로 한 농업경제가 기반이던 사회에서는 혈연 중심의 배타적 가족 제도가 합당한 측면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으며 가부장의 존재와 역할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산업 혁명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되면서 우리 사회 또한 산업화, 도시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미 농경사회의 기반이자 산물인 대가족 제도 및 그 제도의 근본이념이었던 남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제는 그 소명을 다한 상태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제도는 이미 보편적으로 부부 중심의 핵가족 제도로 재편되었으나 그 윤리와 가치관은 여전히 농경사회의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화지체로서 그 중심에 호주제가 있다 할 것이다.

오늘날 가족제도의 주류인 핵가족은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족제도이며, 부부는 혈연관계가 아닌 애정이 중심이 되는 관계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가족윤리 또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자명해진다. 헌법이 명시하듯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렇듯 평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이 부부관계의 핵심인 것이다. 그런데 헌법의 하위법인 민법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혼인과 동시에 아내를 남편의 부속적 존재로 치환시켜 버리고 자녀 또한 아버지의 지배하에 두어 버린다. 그리고 여전히 부모 중심, 가(家) 중심의 가족제도를 고집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가족문제의 본질은 역사적으로 시효가 만료된 가부장적 유령이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데 있으며 이는 대표적으로 아내와 자녀에 대한 폭력과 방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이자 아버지가 가정의 지배자이고 주인이므로 아내, 자식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정폭력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허울과 명목뿐인 대를 잇기 위해 혼인의 신성함을 유린하는 외도가 용인되고, 아들을 낳기 위해 선택적 낙태를 통해 같은 핏줄인 딸들을

살해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가정이 도덕적인가? 세계 최대의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 또한 이렇듯 내 핏줄에만 집착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혈연이 아니라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사회적으로 문제 가정으로 낙인찍혀야 하는 이유를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호주제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 호주제와 인권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과 그 구성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히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호주제가 존재하는 한 법은 이들을 포용하지 못한다.

'그깟 이혼녀들과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미풍양속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비이성적 목소리가 호주제를 둘러싼 존폐의 논란 가운데 여론의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에 소개된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폭력일 따름이다. 표현을 조금 순화해도 호주제 존치론의 본질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혼은 범죄가 아니며 이혼녀도 범죄자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록 그가 범죄자일지라도 이러한 인권유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 때문에라도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절대로 이렇듯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자유·평등·독립의 주체이며 인권을 유보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미풍양속이 될 수 없다. 호주제는 이혼자 특히 이혼녀와 그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제도이다. 사실 호주제 폐지는 그 존폐를 더불어 논하는 것조차 국제 사회에서의 수치라고 본다.

호주제 폐지는 존치론자들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계도할 문제인 것이다.

3) 호주제 폐지에 대한 시민적 요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변화하는 여론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가 시대적 요구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호주제와 관련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이 조사는 2003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 응답자가 무기명으로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연령과 지역을 고려하여 9,593명을 임의추출 하였다. 자료의 분석과정에서는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중치를 두어 분석하였으며, 표본의 최대한계허용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pm 1.0\%$ 였다.

이 결과 조사대상자의 66.2%가 호주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존속시켜야 한다는 응답자는 33.8%였다. 남녀로 구분하여 볼 때 호주제 폐지에 대해 여성의 82.3%가 찬성한 반면, 남성 찬성자도 50.1%나 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찬성 남 66.7% 여 91.0%, 20대는 남 62.1% 여 88.4%, 30대는 남 66.9% 여 91.6%, 40대는 남 51.9% 여 83.7%, 50대는 남 30.6% 여 69.3%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는 남 19.6% 여 55.4%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일단 1999년에 본 상담소가 실시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 폐지 주장이 41.7%(총 1,791명 중 746명)에 달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폐지 주장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30대와 40대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여성들이 호주제의 문제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제주, 경상외의 6개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6개 지역 모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본 상담소가 실시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당시 강원·충청·전라에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한 응답자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이 76.2%로 가장 높았으며, 그밖에 경기 74.1%, 경상 73.8%, 전라·제주

71.4%, 서울 67.8%, 강원 67.5%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999년의 설문조사와 비교해 본 결과,

호주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들의 호주제 폐지 찬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피해 당사자인 여성들의 문제의식이 높고, 연령대가 젊을수록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호주제 폐지는 시대적 요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자녀의 성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현행 가족법의 문제를 여실하게 보여 주었다.

4. 맺음말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호주제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음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호주제 폐지는 우리 사회가 헌법에 부합되는 민법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주요한 과정일 뿐 결코 궁극의 과제는 아니다.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며, 가족 및 사회에 역기능으로만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 존폐를 논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폐지를 전제로 이후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현실에 입각한 가족제도를 위해 관련법을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가정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이다. 부모와 자녀 두 세대로 구성된 가족에서 '가족을 통솔하고 가를 이어가는 자'로서의 호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혼인의 10%를 차지하는 재혼가족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누가, 무슨 권리로 제한할 수 있는가.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붕괴된다는 주장은 이제 더불어 논할 가치조차 없다. 현재 세계 8위, OECD 가입국 가운데 2위인 우리 사회의 이혼율은 그 자체로서 뿐 아니라 이것이 정점이 아니라 더욱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듯 증가 일로에 있는 이혼율이 호주제를 계속 존속시킴으로써 둔화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착각이거나 기만이다. 오히려 현재 호주제가 존속함으로써 그 관념에 기댄 잘못된 관습들로 인해 슬한 가정들이 파탄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호주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 우리 가족을 가족이라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인 것이 아니다. 법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면 많은 이들이 호주와 세대주를 혼동하고 세대주가 곧 호주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호주제 존치론은 이런 편견과 잘못된 상식에 기대어 있는 것이다. 호주라는 말이 법에서 삭제된다는 것은 가족 사이에 쌓아온 사랑과 유대가 더불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위와 허위로 가족 구성원 위에 군림하려 함으로써 갈등의 뿌리가 되어온 가부장제의 잔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 가부장제의 유령을 몰아내야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따뜻한 사랑과 정서적 동질감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은 오랜 세월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인류 보편의 절대 가치이다.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고, 마땅히 우리 가정과 사회도 이러한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한다.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근원부터 부정하는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하며 전근대적인 악습이다. 구성원의 절반을 인류의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가족제도의 옹호를 논할 수는 없다.

한 집단의 특수성이란 전체의 보편성에 근거할 때에만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며, 호주제는 역사 발전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가부장제의 마지막 흔적일 따름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호주제를 폐지한다하여 현실의 우리 가족관계가 부정적 측면으로 변화될 것은 조금도 없다. 오히려 남성들은 내용 없는 호주제로 인한 부담감을 벗어버릴 수 있고,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인격주체로써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 역시 형식적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더욱 친밀하고 새로운 가족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호주제 폐지가 민법 개정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지만, 의미 있고 중요한 관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 문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에 맞는 21세기 우리 가족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 배경숙, '호주제도와 양호주제도의 문제점', 「인하대 사회과학 논문
집 1집」, 1981.12.
- 기세훈, '호주제도에 관한 고찰', 「가족법의 제문제」, 1984.
- 곽동현, '호주제도 존치론의 허구', 「가족법연구 창간호」, 1984.
-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1984.9.
- 전봉덕,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족법개정의 제문제 논집」,
1985.
- 곽동현, '호주제도에 관한 존폐론', 「가족법개정의 제문제 논집」,
1985.
- 배경숙, '호주제도의 폐지와 인구정책의 영향', 「가족법개정의 제문제
논집」, 1985.
- 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 1995. 11.
-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 손현경,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의 문제점', 「가족법연구 제10호」,
1996.
- '아버지 피만 피가 아니다', 「한겨레 21 제177호」, 1997.10.9.
- 조미경, '혈통진실주의', 「가족법연구 제12호」, 1998.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창립총회 및 토론회 자료집」
1998.11.4.
- 양현아,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 1999.
-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1999.1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여성특별위원회, 「호주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1999.1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2003.6.